

제 4회 사회적경제 리더십포럼

사회적경제 법제도 현황 및 발전방향

재단법인 동천

변호사 양동수

INDEX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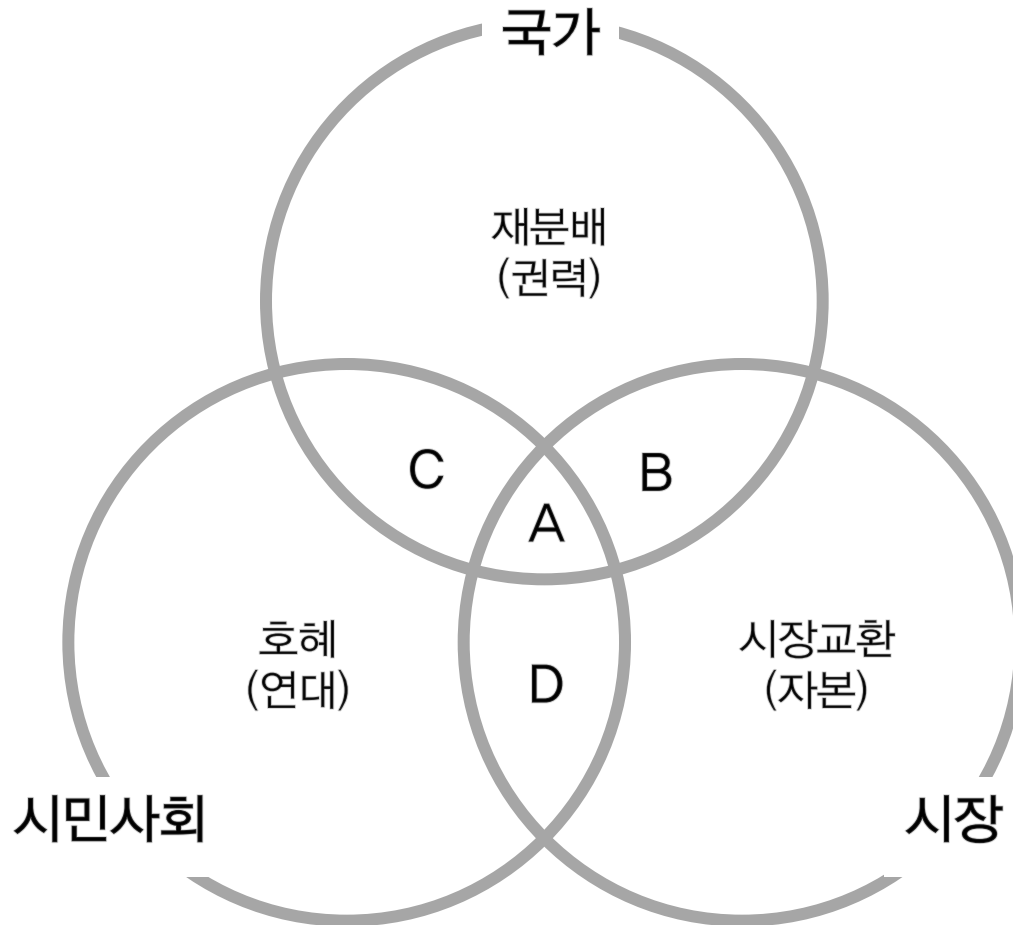
1. 법제도적 딜레마
2. 법제 현황
3. 법제도 발전방향
4. 새로운 법체계 구축의 필요성



1. 법제도적 딜레마



- 사회적경제 ?



경제의 세 가지 영역
Three Systems of the Econom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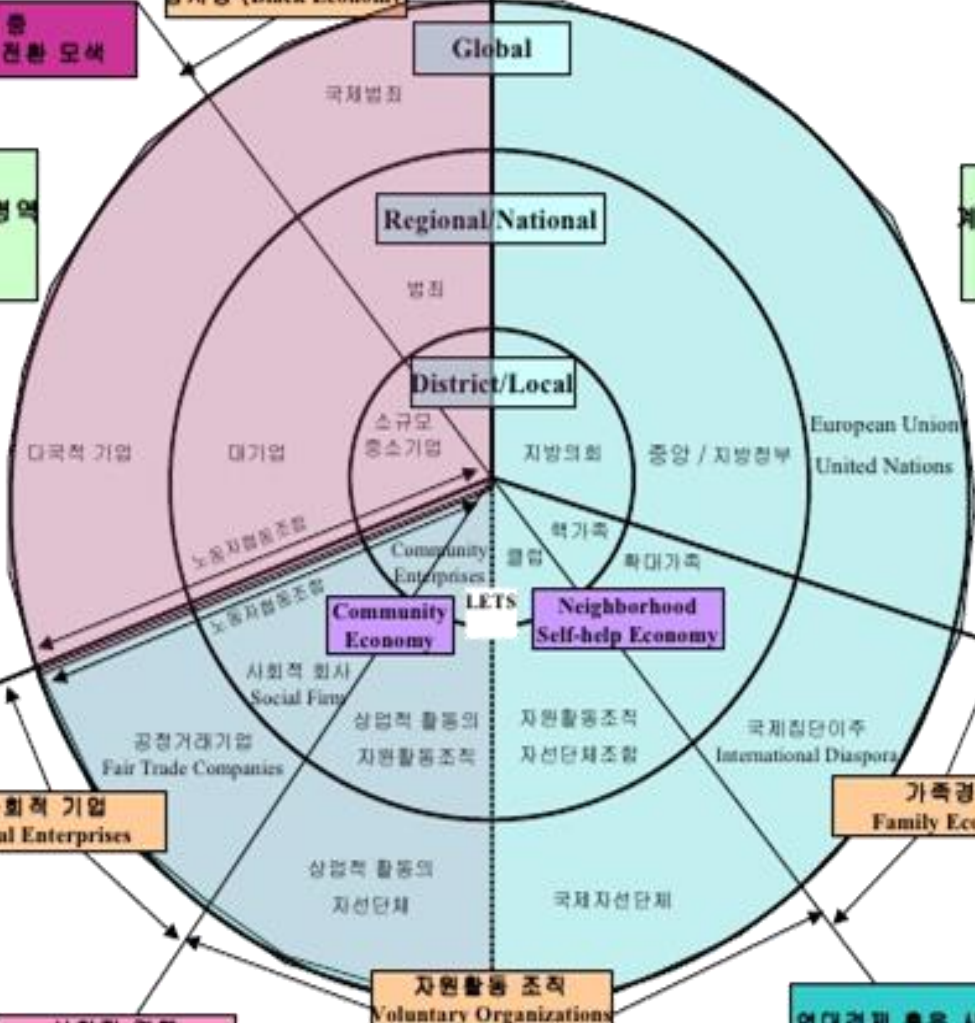
시장지향적 상업
Market-driven Trading

비상업적 계획경제
Planned Economy Non-trading

권력 모색 등
노동 패러다임의 전환 모색

First System
이윤 지향적 인간영역
"교환"

Second System
계획공급의 공공서비스
"재분배"



Third system
사회적 목적에 기반한 상호적 자조영역
"호혜"



– 각국의 사회적경제 정의 및 핵심원칙



한컴오피스 한글
2014 문서

- 해외 사회적경제기본법 비교표
 - 스페인, 포르투갈, 프랑스, 캐나다 퀘벡, 에콰도르, 멕시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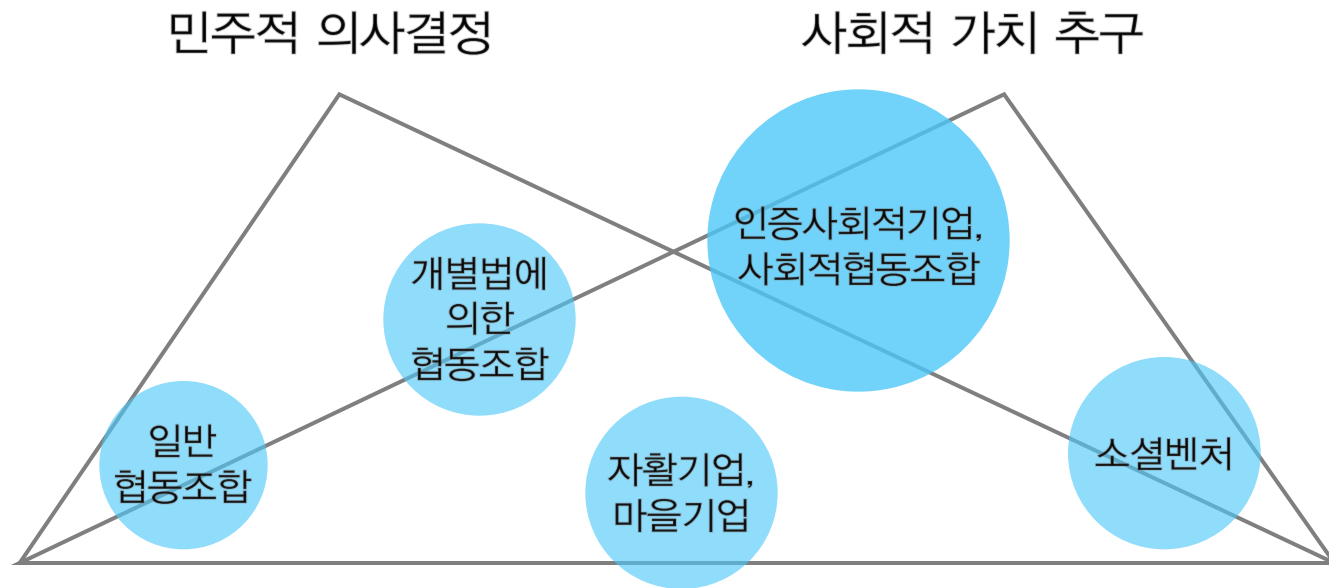
〈 핵심원칙 〉





– 사회적경제 조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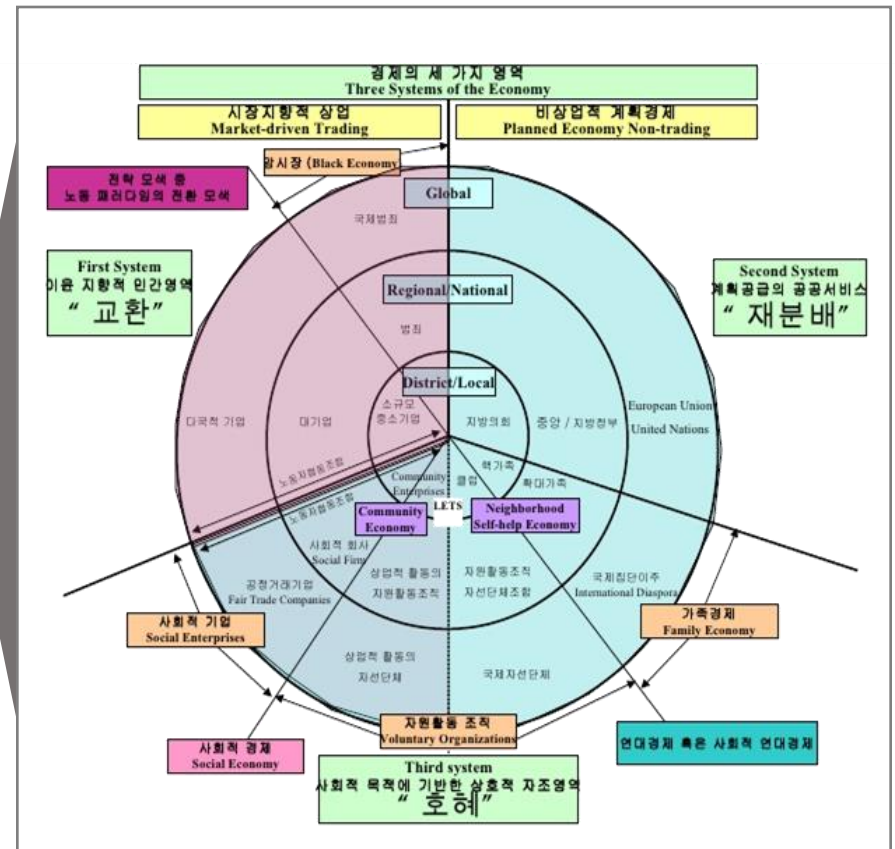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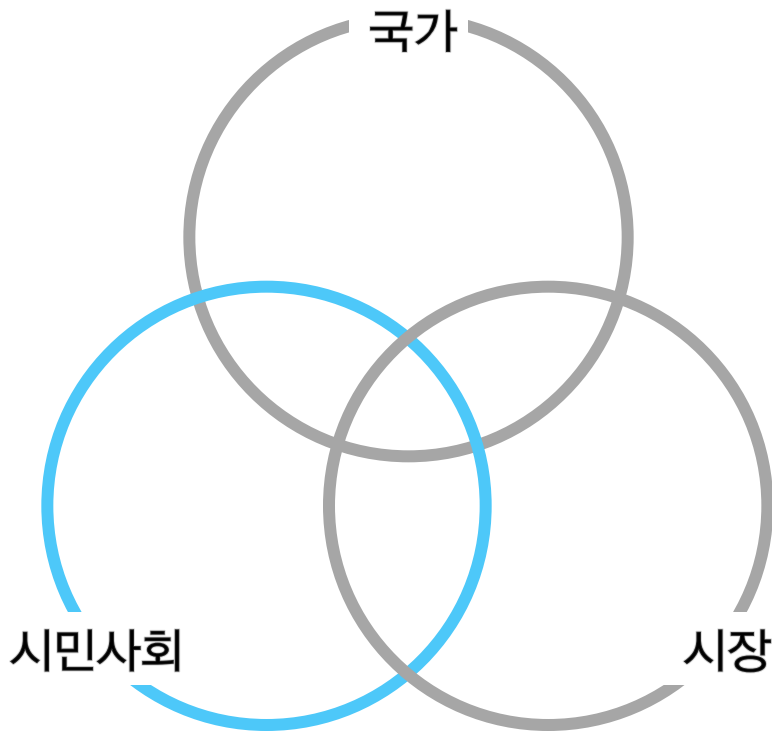
- 사회적경제조직 : 직접적인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조직
-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자활기업, 마을기업, 사회투자조직 등으로 구성





- 시민사회 영역과 경제 영역간의 딜레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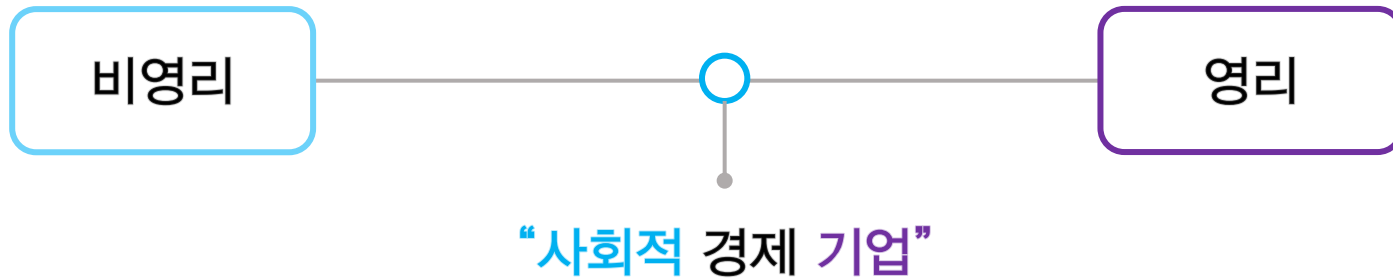
- 기존 법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던 시민사회의 활동 영역이, 사회적경제로 규정을 받게 되면서 딜레마가 발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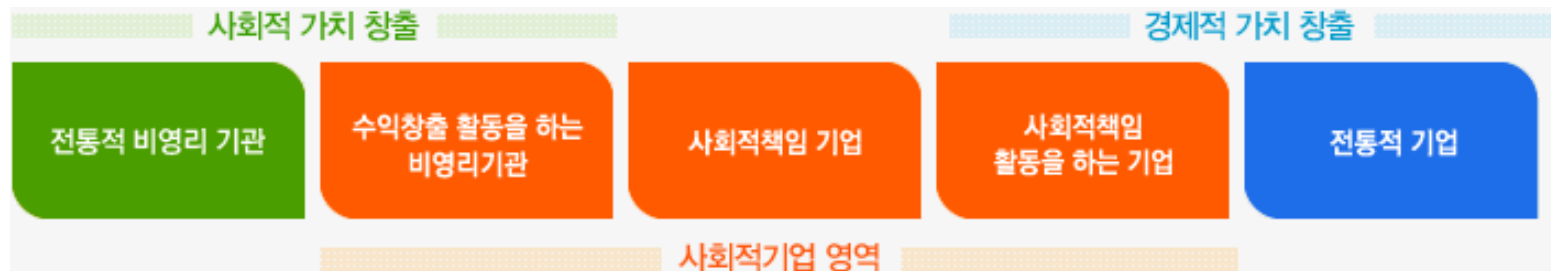


– 비영리와 영리 사이의 딜레마

- 사회적경제기업은 비영리와 영리사이에서 그 위치가 모호해, 법제도적 딜레마가 발생



- 조직형태 기준 : 비영리기업 형태 ~ 영리기업 형태의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존재
- 조직의 활동 기준 : 활동특성 상, 비영리성을 띠는 경우가 많음
- 세제혜택 등을 위한 지정 및 인증 시, 영리와 비영리 사이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위치가 모호함





2. 법제 현황



- '사회적' 경제기업을 위한 법제 현황

사회적기업	협동 조합	자활 공동체	마을 기업	농어촌공동체회사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• 관계 부처 고용노동부(2007) • 근거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·생산·판매·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• 관계 부처 기획재정부(2012) • 근거법 협동조합 기본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해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한 조직 • 관계 부처 보건복지부(2000) • 근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의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 • 관계 부처 안정행정부(2013) • 근거법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의 지역주민 또는 귀촌 인력이 지역의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조직 • 관계 부처 농림식품부(2011) • 근거법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특별법



사회적기업

협동 조합

자활 공동체

마을 기업

• 사회적기업 육성법 (2007)

〈2007년 제정〉

- 내용 및 목적 :

- ①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체계 구축

(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생산활동을 통해 수익을 올리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의미 있는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)

〈2010년 개정〉

- 내용 및 목적 :

- ① 사회적기업의 정의 확대
- ② 시·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
- ③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

〈2012년 개정〉

- 내용 및 목적 :

- ① 사회적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촉진
- ② 사회적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

(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보고, 거짓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등을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요건에 추가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)

사회적기업

협동 조합

자활 공동체

마을 기업

• **협동조합기본법 (2012)**

〈2012년 제정〉

- 내용 및 목적 :

- ①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근거 마련
- ② 협동조합의 설립·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

(「농업협동조합법」 등 기존 8개의 개별 법 체제에 포함되지 못하거나 「상법」에 의한 회사설립이 어려운 경우 생산자 또는 소비자 중심의 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경제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함)

〈2014년 개정〉

- 내용 및 목적 :

- ① 대의원 총회 정수규정
- ②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시, 절차간소화
- ③ 상법상 회사 합병허용

(협동조합의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(定數)를 정하여 소수의 대의원이 사실상 결정권을 독점하는 문제를 해결하며, 기존 법인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때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조직 변경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, 협동조합이 상법상 회사의 흡수합병을 허용)

〈2015년 개정〉

- 내용 및 목적 :

- ① 협동조합원 외 이용 허용

(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의 이용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조합원 또는 회원 외 이용금지 규정을 비조합원 또는 비회원 이용가능 규정으로 변경)

사회적기업

협동 조합

자활 공동체

마을 기업

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(2007)

<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165571&efYd=20141230#0000>

〈2007년 제정〉

- 내용 및 목적 :

- ① 중앙자활센터 설립
- ②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

〈2015년 개정〉

- 내용 및 목적 :

- ① 시·도 단위 광역자활센터 지정근거마련
- ② 자활사업 대상자의 취업·창업을 위한 자활촉진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[시행 2014.12.30.] [법률 제12933호, 2014.12.30., 일부개정]

▣ 조문

- ▣ 제1장 총칙 <개정 2012.2.1>
- ▣ 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
- ▣ 제2장의2 자활 지원 <개정 2012.2.1>
 - ▣ 제15조의2 중앙자활센터
 - ▣ 제15조의3 광역자활센터
 - ▣ 제16조 지역자활센터 등
 - ▣ 제17조 자활기관협의체
 - ▣ 제18조 자활기업
 - ▣ 제18조의2 고용촉진
 - ▣ 제18조의3 자활기금의 적립
 - ▣ 제18조의4 자산형성지원
 - ▣ 제18조의5 자활의 교육 등
- ▣ 제3장 보장기관
- ▣ 제4장 급여의 실시
- ▣ 제5장 보장시설
- ▣ 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
- ▣ 제7장 이익선정
- ▣ 제8장 보장비용
- ▣ 제9장 벌칙 <개정 2012.2.1>

▣ 부칙

- 자활 공동체에 대한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되어있음
-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은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함



사회적기업

협동 조합

자활 공동체

마을 기업

•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(2013)

<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149567&efYd=20150101#JP1:0>

〈2013년 제정〉

– 내용 및 목적 :

- ①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 체제 구축
- ② 마을기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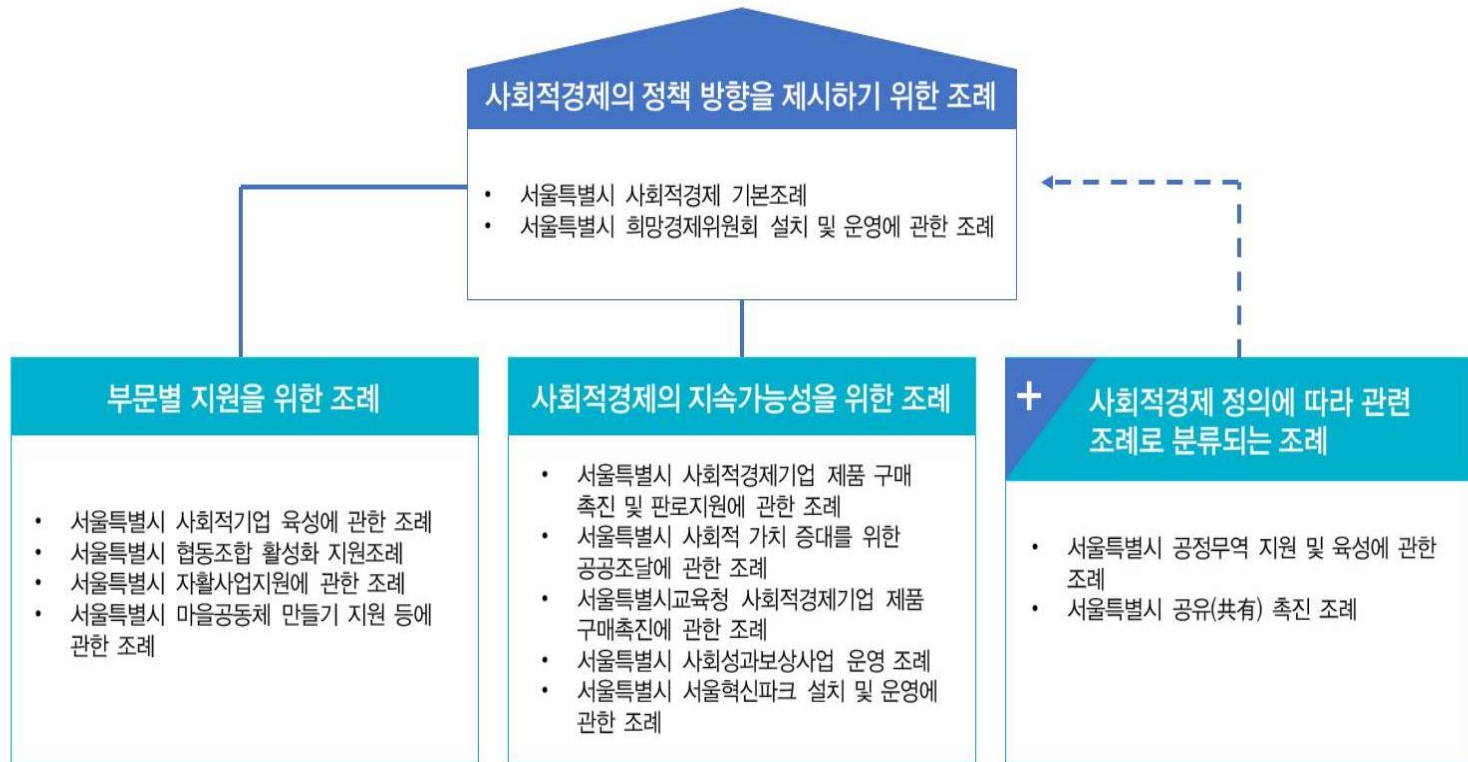
제4장 도시재생사업의 시행

- 제25조(도시재생사업의 시행) ① 도시재생사업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한다.
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제2조제7호 각 목의 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이 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으로 본다.
- 제26조(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) ① 도시재생사업 중 다른 법률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.
 1. 지방자치단체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
 3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
 4.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토지 소유자
 5. 마을기업,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,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제2조제7호 각 목의 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로 본다.

- 마을기업은 일부 조항의 주체로서 규정되어 있을 뿐임
-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은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함

조례 현황

- 참고: 서울시 조례 현황 (2015)



– 사회적경제 ‘기업’의 설립 및 운영 관련 법제 현황

- 사회적기업의 경우, 일반기업보다 검토해야 할 법률의 범위가 더 다양함

01 기업 설립단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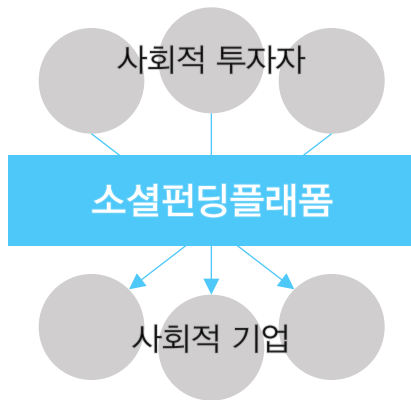
- **영리법인을 선택 시,**
 - 상법
 - 협동조합기본법(일반협동조합)
- **비영리법인을 선택 시,**
 - 민법(사단법인, 재단법인)
 -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(공익법인)
 - 사회복지사업법(사회복지법인)
 -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(비영리민간단체)
 - 협동조합기본법(사회적협동조합)

02 기업 운영단계

- **사업 운영 시 적용되는 법률**
 - 사업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별법
 - 적법한 노무관리를 위한 근로기준법 등을 비롯한 노동관련 법률
 - 적법한 세무회계를 위한 법인세법 등을 비롯한 세무회계 관련 법률 및 규칙
 - 적법한 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한 저작권법 등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
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기 위한 국가계약법 등을 비롯한 행정 관련 법률
 -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 -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 - 개인정보보호법 등 일반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데 준수하여야 할 법률



CASE1 소셜 펀딩 중개하는 사회적기업



“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소셜 펀딩을 중개하면서 사회적 기업에 관심 있는 대중투자자들에게 특정 사회적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, 그 정보를 통해 투자자들이 특정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.

현재 저희는 개인통신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데, 위의 사업을 시행하는 데 다른 종류의 사업면허가 필요할까요? 혹은, 이런 사업방식이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.”

〈 검토해야 할 법률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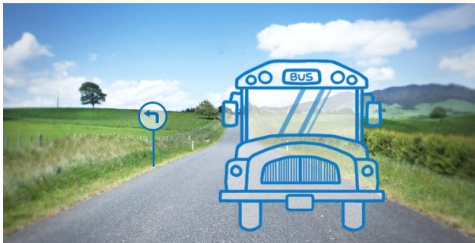
- 「대부업법」
- 「전자금융거래법」
- 「전자상거래법」
- 「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」



CASE2 버스 공유 서비스를 만들려는 소셜벤처의 경우

즐거운 나눔을 향해,
함께타요! <열린버스>

경제적 이유로 이동에 제한이 있는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공유버스를 운영하여
이동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열린버스 사업을 진행합니다.



“버스노선이 없는 구간에 사람들을 모아 버스를 대여하고
함께 이용할 수 있는 버스를 운행하려고 합니다.

어떠한 법을 검토해야 할까요?”

〈 검토해야 할 법률 〉

-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」
: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이하의 징역 !
-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아,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가 필요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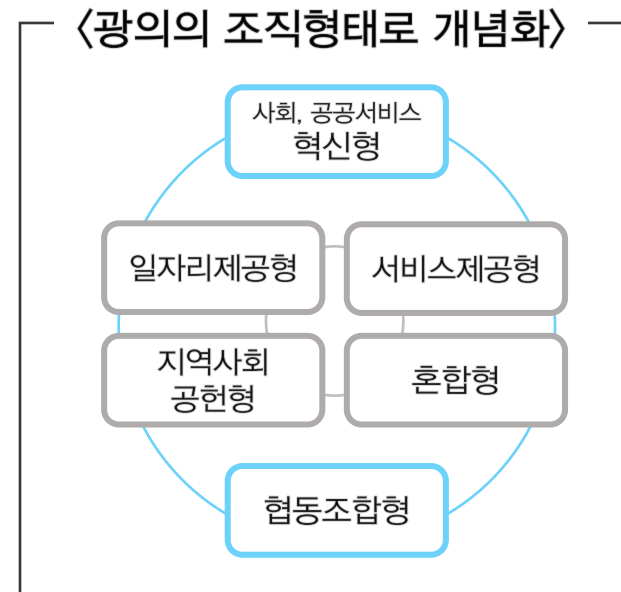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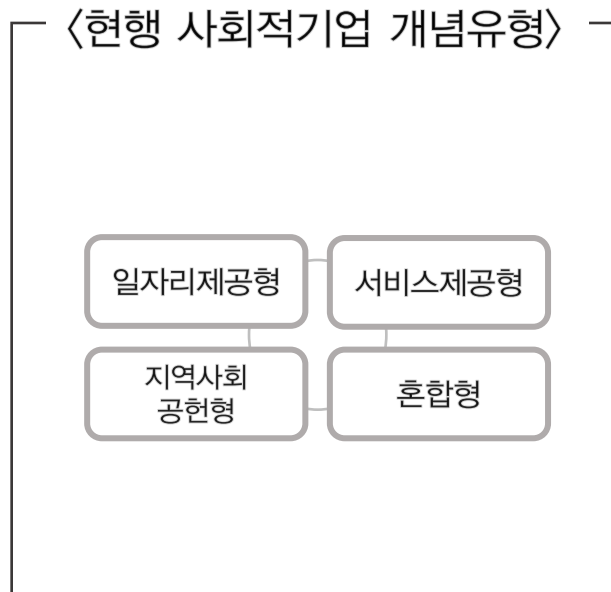


3. 법제도 발전방향

– 사회적기업 육성법

01 사회적기업의 개념 확대 필요

- 현행 사회적기업 개념유형은 한정적으로만 사용되고 있음
- 기존 개념과 더불어, 다양한 유형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의 정의 확대가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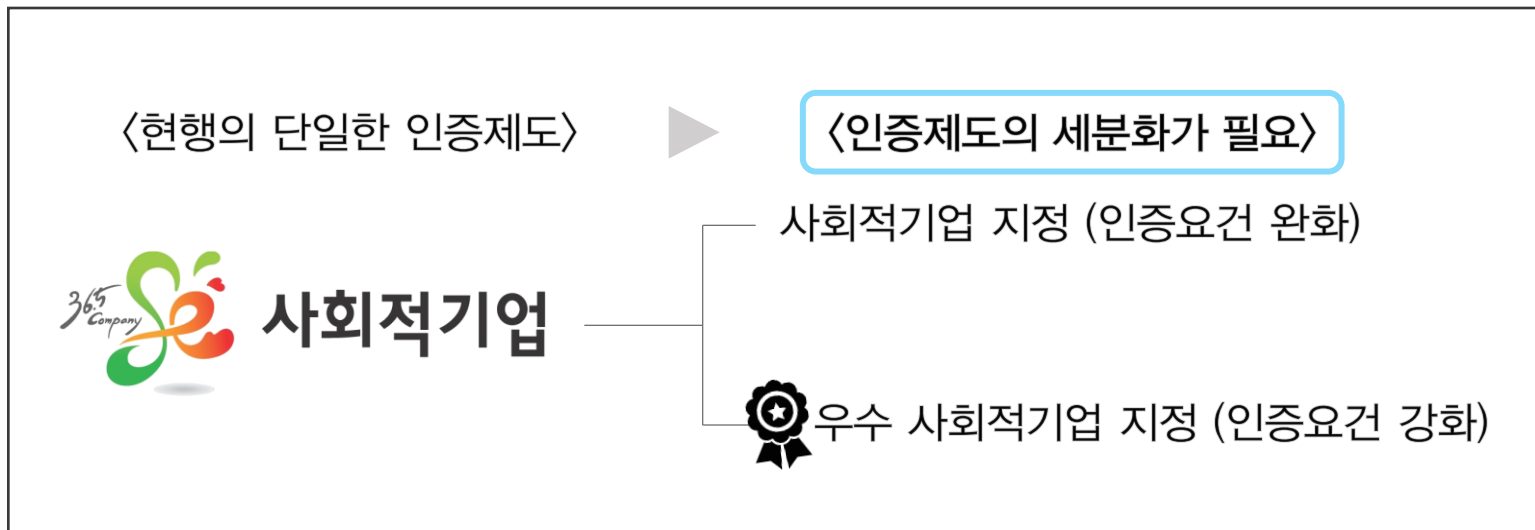




– 사회적기업 육성법

02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보완 필요

- 제안 : 현행의 단일한 인증제도를 '지정-우수인증제도'로 이원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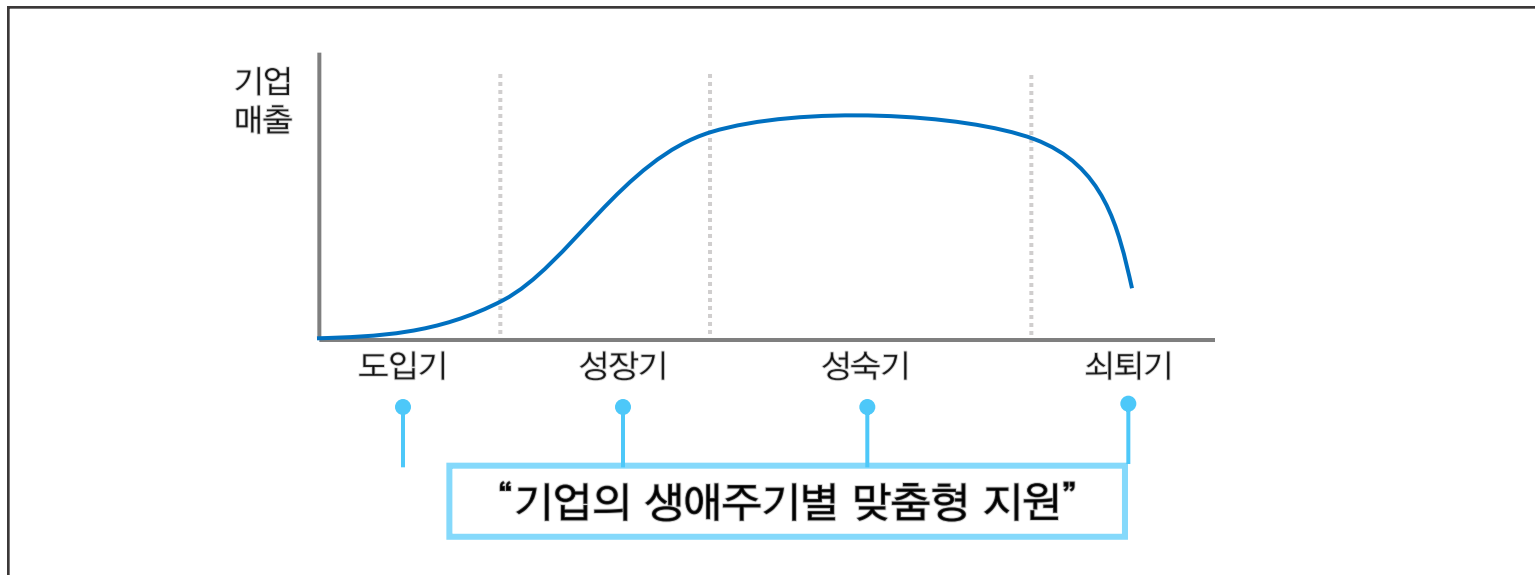




– 사회적기업 육성법

03 기업의 생애주기 및 형태별 맞춤지원으로 변경

- 제안 : 인증제도의 보완과 연계 해, 지원제도 역시 '인건비지원형-경영지원형'으로 구분하고, 기업의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이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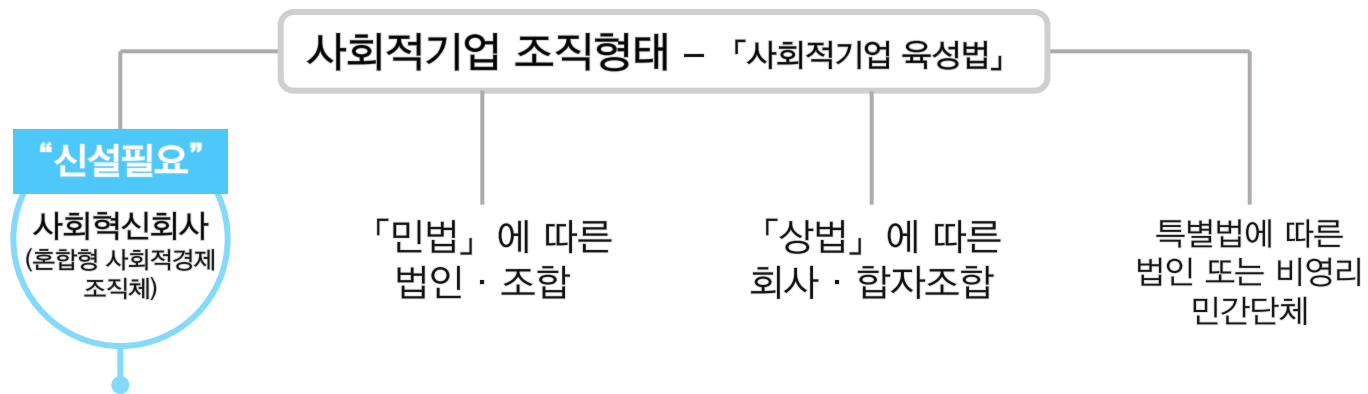




– 사회적기업 육성법

04 새로운 법인격 도입

- 제안 : 사회적기업법 육성법내에 ‘사회혁신회사’ 등 새로운 법인격을 신설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



- 사회적기업에 특화된 법인격
- 영리회사를 기반, 설립은 상법상 회사처럼 용이하게
- 강력한 사회적 미션 지향성을 가지고 사회적 목적 실현



– 협동조합 기본법

01 협동조합 운영관련 개선 필요

-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제정, 개정되어 왔고, 기업의 생애주기 중 소멸 단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음

01 협동조합 탈퇴, 해산, 청산 절차의 개선 필요

- 조합원 탈퇴시 지분환급 청구에 대하여 정관의 자율성 범위에서부터 청구 금지 가능여부에 까지 논란이 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명확한 지침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태임
-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설립되어 운영되지 않고 있는 협동조합이 상당수 있으나, 이에 대한 해산 및 청산이 진행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관련 절차에 대한 간소화 또는 지원이 필요함

02 협동조합 흡수합병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

- 2014. 7. 개정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사회적협동조합이 민법상 사단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현재 민법에서는 사단법인의 합병에 관한 조항이 부재하여 사실상 절차적으로 흡수합병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임

03 협동조합 조직변경 시 부당과세에 대한 법률지원 필요

- 협동조합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등록세, 조직변경 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내용은 선례가 없어 부당하게 과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지방세법, 법인세법 또는 그 시행령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



– 협동조합 기본법

02 협동조합 법인격에 신설에 따른 타법개정이 필요

- 일반협동조합은 영리기업,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기업으로 규정하면서도 실제 운영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거나 국가기관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허가 및 인가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

01 일반협동조합

- 영리기업으로 인식하면서도 현행 법률상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관련 인증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
- 혹은 유료 직업소개소, 부동산 중개업 등 법률상 상법상 회사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법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

02 사회적협동조합

- 비영리법인이라고 법률상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민간단체로 인증해주지 않는 사례가 있음
-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이 협동조합기본법이 개정된 상태에서 변경되지 않아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사업조차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



– 사회적경제 기본법 전망

➤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진행상황



출처 : 머니투데이

- 2014년 4월 새누리당을 시작으로 새정치민주연합, 정의당이 각각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발의
- 이후,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여야합의안을 마련하였음
-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 중,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파행을 거듭하는 중
-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마친 상황이지만, 현재로서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불가능해진 상태



– 사회적경제 기본법 전망

01 기본법의 역할 및 목적

01 기본법의 정의

- '기본법'은 정책입법으로서의 기능과 성격을 가지는 매개법률로, 국가의 가치나 정책의 이념,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
- 개별법을 제정하거나 정책을 추진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해주는 법률
- 정책의 지향점이나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

02 기본법 제정 효과

- 기본법은 총론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 개별법 혹은 조례의 근거법률로서 작용하게 됨
-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제정되면 그에 근거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특별 법률제정 가능
(ex. 사회적 금융 특별법 등)
- 지금까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에 대한 근거가 생기는 효과를 가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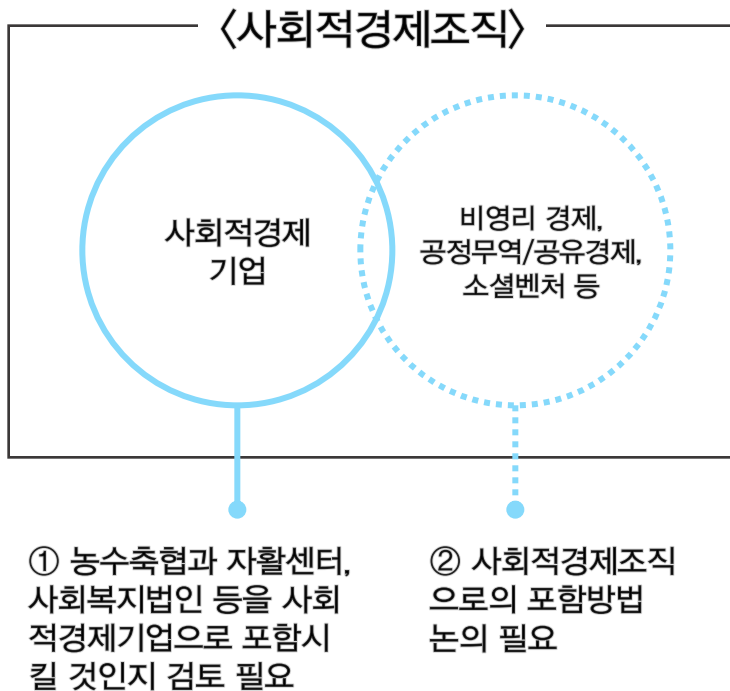
03 기본법 제정 목적

-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확대를 위해 제정되는 법률임
- 그러므로,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목적은 정책적 수단이 아닌,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이 되어야 함



– 사회적경제 기본법 전망

02 사회적경제조직의 정의 및 범위



- 사회적경제조직-기업을 나눠서 생태계내의 역할과 지원대상 시스템의 차별화가 필요
- '사회적경제조직' 개념 정의 시, 조직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'혼합적 정의규정' 방식의 채택이 필요
- 혼합적 정의 규정 : 단순한 열거방식이 아닌, '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' 또는 '사회적 가치'에 대한 요건을 기본요건으로 두고, 이를 충족 시,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포섭시키는 규정

– 사회적경제 기본법 전망

03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체계

01 위원회의 구성



- 사회적경제가 국가정책 중 주요한 구성요소의 하나로서 추진되기 위해,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두는 것이 바람직함
- 위원회가 심의/조정 기능을 하는 위원회로서 제대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, 민관 협력 거버넌스 조직의 도입이 필요
- 지역 기반으로 성장하는 사회적경제 특성 상, 지역 사회적경제위원회의 마련이 필요

02 위원회의 기능, 권한



① 사회적경제 기본 계획 수립

– 위원회는 전문위원회 또는 사무국, 사무처를 두고 조직적 역량을 갖추어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



② 정책 운영사항 심의·조정

– 위원회는 국가의 사회적경제 발전과 관련한 주요 정책 및 기본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함



③ 부처 간 이해관계 조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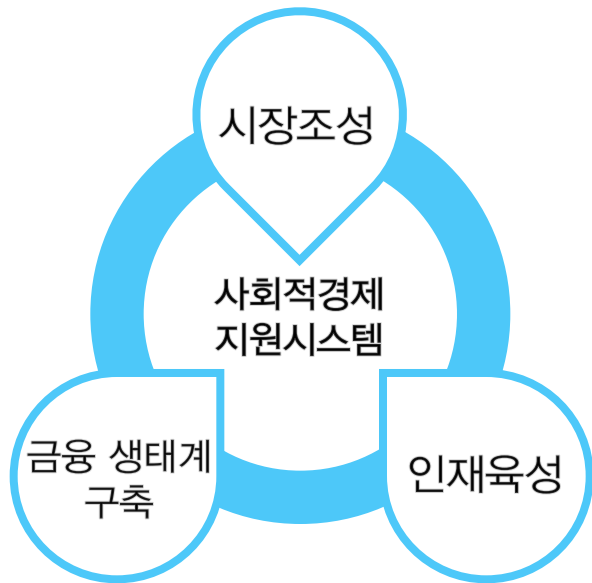
–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조화로운 정책 추진을 총괄하고 각 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함



– 사회적경제 기본법 전망

04 사회적경제 지원시스템 : 구조

- 사회적경제가 독자적인 지위를 가진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가지 요소, 즉 시장 조성, 인재육성, 금융 생태계 구축을 주축으로 지원체계를 수립해, 사회적경제 영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지원이 필요함



01 시장조성

–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장 형성

02 금융생태계 구축

– 운영 및 자본조달을 위한 금융시스템 구축

03 인재육성

– 사회적경제 당사자, 중간지원조직, 지원전문가 그룹 등의 인적자원 육성



– 사회적경제 기본법 전망

04 사회적경제 지원시스템 : 기관

- 각 부처들의 지원이 통일성을 가지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회적경제진흥원(가칭)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행정청의 하도급기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회적경제진흥원의 지위와 지역조직의 지위를 적절히 조율하여야 할 것임
- 사회적경제원은 사회적경제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설립을 하되 플랫폼 기능을 하는 조직으로 직접 사업보다는 사회적경제 당사자조직과 그 연합회 또는 지역연합조직에 우선 위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, 장기적으로는 사회적경제연합조직이 자율성, 대표성과 독립성을 갖추면서 스스로 사회적기업 지정 및 인증, 협동조합 설립지원 및 사회적협동조합 인가, 마을기업 지정, 자활기업 지정/각종 재정지원사업/기초 교육/기초 경영상담/홍보 및 네트워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발전전망이라고 판단됨



– 사회적경제 기본법 전망

05 사회적경제 기금

- 기본법 제정이 중앙 부처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를 지속적으로 내기 위해서는 금융 혹은 기금을 형성하고 운영해야 함

01 사회적경제 발전기금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

- 금융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경우, 자금의 흐름이 확대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, 자금의 운용이 사업화 되어 현장에 대한 고민을 고려하지 않는 폐단이 발생하거나 풀뿌리지역 사회적 금융기관의 운영역량이 약화될 위험이 있음
- 그러므로 사회적경제 기금의 형태는 발전기금의 형태로 구성해,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금융으로 정의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함
- 사회적경제 기금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에 관한 조치 중 하나로서 사회적금융에 대한 활용은 특별법으로 규정해야 함

02 사회적경제위원회 산하에 기금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

- 사회적경제위원회 산하에 사회적경제 기금 위원회를 두어, 사회적경제 기본계획과 연동하여 사회적경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기금의 운영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해야 함
- 기금 위원회는 지역·풀뿌리사회적금융기관이 기금을 모집하고 중개하는 중간조직의 의미를 갖고 이 기금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지역·풀뿌리 사회적 금융기관의 운영역량의 활용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해야 함



– 사회적경제 기본법 전망

06 공공구매

-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공공구매 조항으로 사회적경제 친화적인 공공시장을 조성해야 함

01 SRPP 구현이 필요

- SRPP (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)
: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공공조달
- 공공구매 조항의 궁극적인 목적은, 단순히 사회적경제 조직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, ‘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’과 이를 통한 ‘사회통합’, ‘사회문제 해결’, ‘사회혁신’임을

02 추가 법제보완이 필요

- 현재, 기본법의 공공구매 조항은 기존 조달계약법의 조항을 개정해야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음
- 기존의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을 일부 보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수익계약이나, 사회적경제 조직간 제한경쟁입찰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

03 특별법 제정이 필요

- 기본법에서는 사회적경제 친화적인 공공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과 정책방향을 제시
- 추가적인 특별법을 제정해,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구매 지원 및 판로지원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절차와 내용을 마련해야 함



4. 새로운 법체계 구축의 필요성

– 기타 사회적경제 주요 법제

01 사회책임조달 관련법

01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정책을 통한 사회적경제 시장조성이 필요함



- 공공조달시장에서 정부는 강한 시장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
- 다수의 국가에서 공공조달과 산업정책, 사회정책, 경제 정책 등을 연계해, 국가의 공익적 이익 확대를 추구하고 있음

- 정부의 조달정책은 사회적기업 시장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
- 공공조달제도의 개편을 통한 사회적 목적 달성은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 채택되어 그 효과가 확인되고 있는 전략임
- ‘공공구매를 통한 사회적 경제 시장조성’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 가운데 하나임

– 기타 사회적경제 주요 법제

01 사회책임조달 관련법

02 사회책임조달 활성화를 위한 법안 발의

– 〈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〉

〈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구매촉진
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〉

- 사회적책임조달과 관련 해, 〈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〉이 2013년 12월 발의됨 (신계륜의원 대표발의)
- 법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정의하고, 구매촉진을 위한 지침 수립,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, 민간위탁의 사회적경제기업 우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
-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생산성 제고 및 판로확대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될 것임
-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연계하여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경제기업을 구분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법률이 될 것임

– 기타 사회적경제 주요 법제

02 사회적가치법

〈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〉

-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이 2014년 6월 발의됨 (문재인의원 대표발의)
- 해당 법안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조달, 개발, 위탁, 기타 민간지원 사업에 있어,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하며, 이러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해, 공동체의 발전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
“

- 발의 법안 자체는 사회책임조달법과 비슷하지만, 사회적가치법은 단순히 사회 책임조달을 넘어 행정 전반에 대하여 사회적가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
- 장기적으로 사회적경제가 공공경제, 시장경제와 더불어 경제영역에 한 영역을 담당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법률이 될 것임

”



– 기타 사회적경제 주요 법제

03 사회적금융 관련 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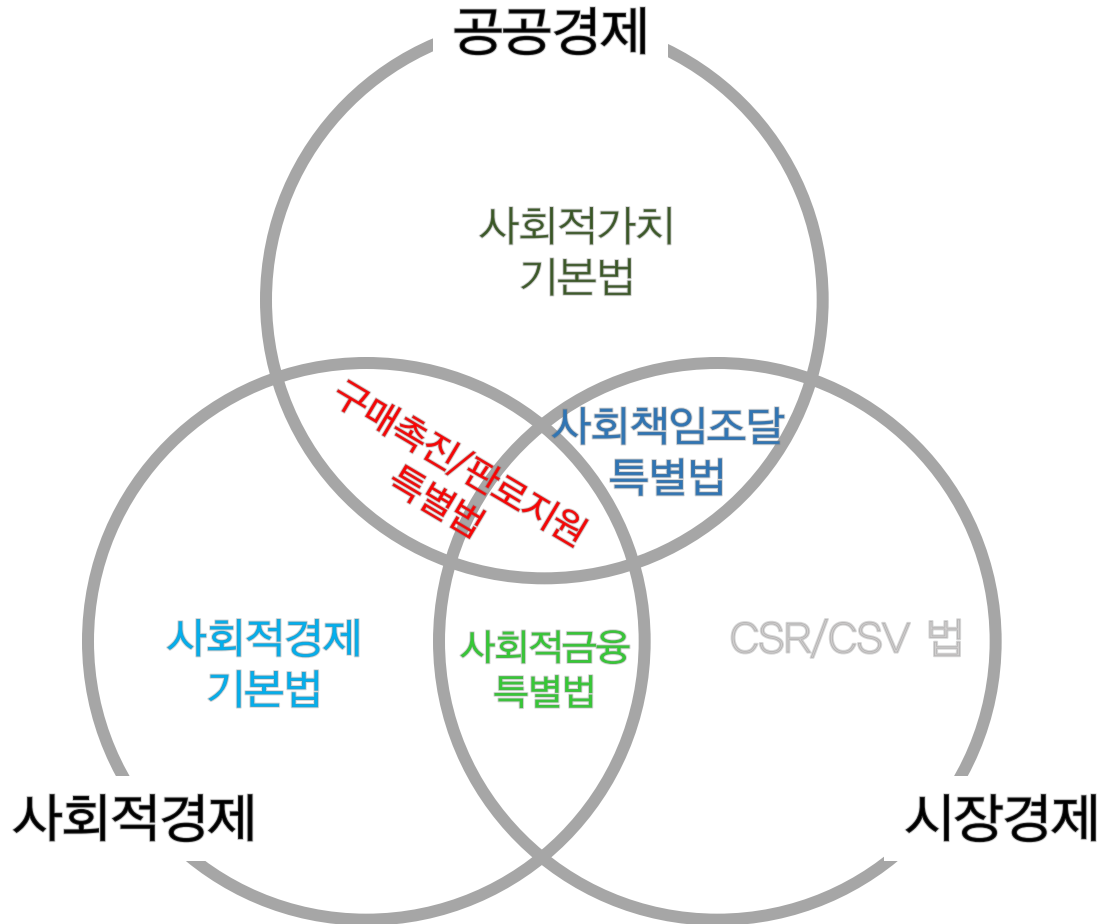
사회적금융

- 금융기관의 ‘경제적 이익’ 보다 ‘사회적 가치 실현’ 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금융으로, 사회적 기업·협동조합 등 사회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자금 수요자에 대한 대출·투자부문을 포괄하는 개념
- 형태 : 사회적 은행, 사회적 주식거래소, 사회적 혁신채권(social impact bond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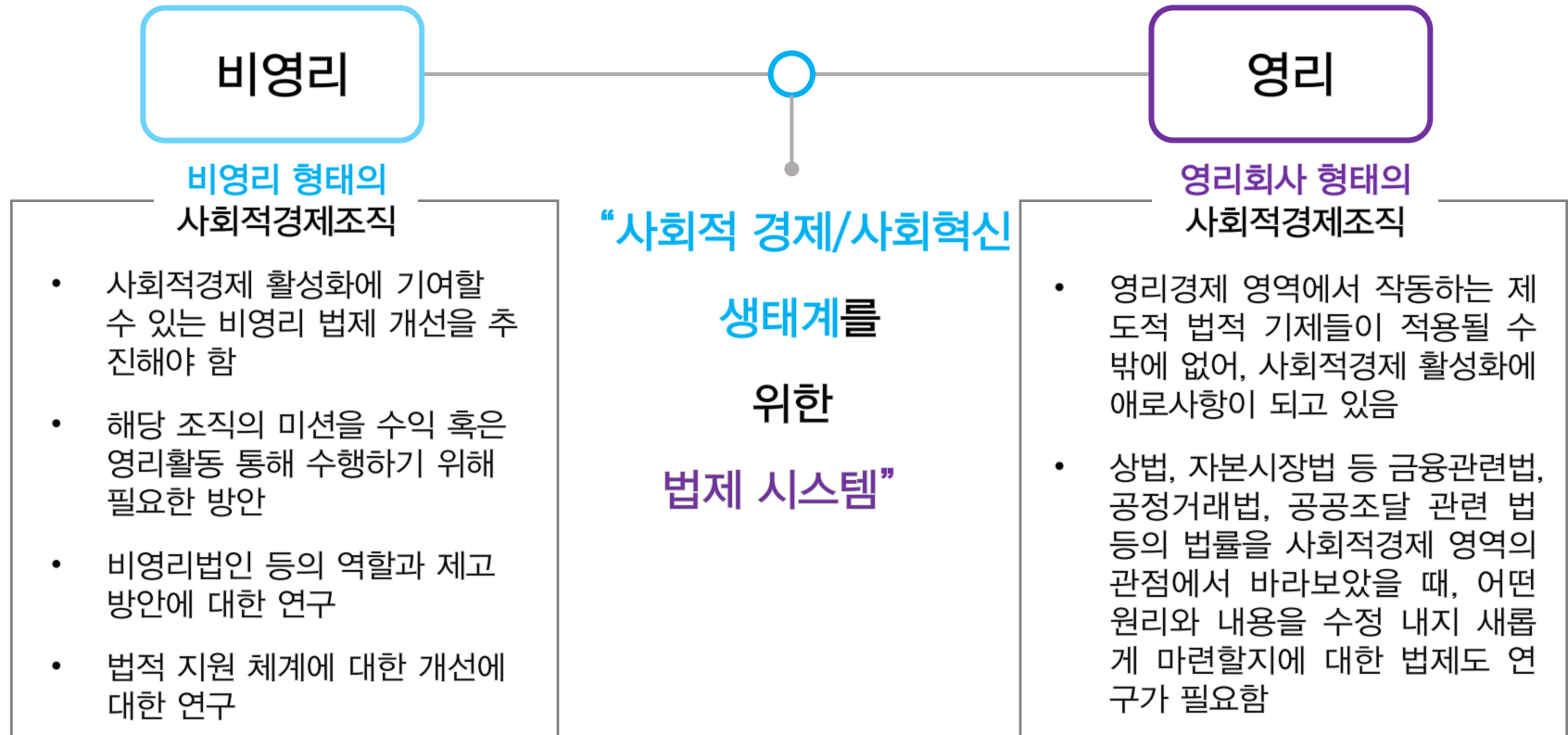
사회적금융 관련 법제 및 조례

- ① 서울특별시, 사회성과보상사업(SIB)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
 - 사회적경제 활성화 동력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만큼, 정부 정책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이 필요
- ② 클라우드 펀딩에 대해,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규정을 포함시키는 논의가 진행중(국회 소위 통과)
 - 사회적경제에서 많이 사용되는 리워드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, 지분형 클라우드 펀딩에 대해서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고려 없이 투자자 보호장치나 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
 - 사회적경제의 클라우드 펀딩 참여에 진입장벽이 발생하거나 투자위축을 불러올 수 있음

– 향후 입법 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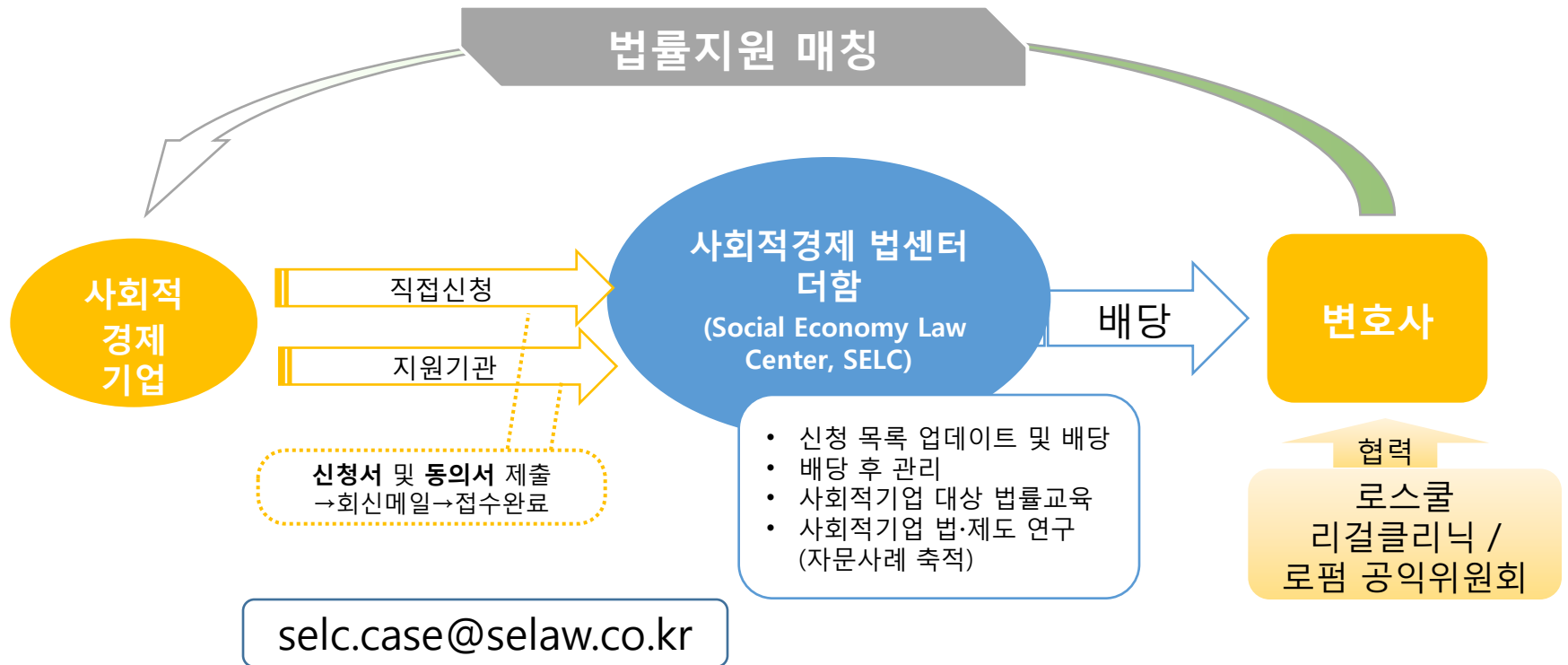


– 새로운 경제를 위한 법체계 구축 필요성



“장기적으로, 영리와 비영리로 이원화하여 운영되고 있는 국내 법체계 틀을 재편하는 논의가 필요함”

사회적경제 영역의 유효 적절한 법률지원을 위해 〈사회적경제 법률지원 시스템〉을 구축, 운영



감사합니다 ^^